

변경대비표(일반및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자문 계약 해지	운용 역 변경	신탁 업자 보수 배분	보수 인출 시기	투자 대상 자산 추가	모펀 드 투자 대상 자산	환매 수수 료 삭제	결산	변동 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○	-	-	-	주 1)	○	-	-	-	10), 11), 12)
2	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 EMP 증권투자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○	-	-	-	-	-	○	○	12)
3	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투자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-	○	-	-	-	-	-	○	○	12)
4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 30 증권투자회사 2 호(채권혼합)	-	-	○	-	주 1)	-	-	-	-	-
5	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-	-	-	○	-	-	-	-	-	-
6	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-	-	○	○	12)
7	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 AP 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-	-	-	-	-	-	-	○	○	12)
8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자신탁 G1 호(주식)	-	-	-	-	주 2)	○	-	○	○	10), 11), 12)
9	미래에셋상생 ESG 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-	-	-	-	-	○	-	-	-	12)
10	미래에셋슬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-	-	-	-	주 1)	-	○	○	○	10), 11), 12)
11	미래에셋슬로몬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주 1)	-	-	○	○	10), 11), 12)
12	미래에셋슬로몬플래너증권투자자신탁 G1 호(주식)	-	-	-	-	주 2)	○	○	○	○	10), 11), 12)
13	미래에셋연금 PanAsia 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-	-	-	○	○	12)
14	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주 1)	-	-	○	○	10), 11), 12)
15	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투자자신탁 1 호(H)(채권)	-	-	-	-	-	-	-	○	○	12)
16	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투자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-	-	-	-	-	-	-	○	○	12)
17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자신탁 G1 호(주식)	-	-	-	-	주 2)	○	○	○	○	12)
18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자신탁 3 호(주식)	-	-	-	-	-	-	-	○	○	11), 12)

19	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주 1)	-	-	○	○	12)
20	미래에셋좋은기업 ESG 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주 1)	○	-	○	○	12)
21	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-	-	-	-	주 1)	○	-	○	○	10), 11), 12)
22	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-	-	-	-	주 1)	-	-	○	○	10), 11), 12)
23	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-	-	-	-	주 1)	-	-	○	○	12)

2. 변경 사항:

- 1) 자문 계약 해지
- 2) 운용역 변경
- 3) 신탁업자보수 배분
- 4) 보수인출시기
- 5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6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7) 환매수수료 삭제
- 8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9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10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11) 법 개정사항 반영
- 12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3년 1월 27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- 1) 자문 계약 해지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9. 가.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<p>※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인도 현지 통화 채권 투자와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.</p> <p><중략></p> 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</p> <p><중략></p> <p>② 인도 현지통화 채권에의 투자는 공기업 관련 채권 등 상대적으로 우량채권 위주로 종목을 다변화할 예정이며,</p>	<p><삭제></p> <p><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></p> <p><중략></p> <p>② 인도 현지통화 채권에의 투자는 공기업 관련 채권 등 상대적으로 우량채권 위주로 종목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. 다만, 인도 현지통화 채권의 특성 상 투자대상 채권</p>

	<p>인도 현지의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자문 정보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할 예정입니다. 다만, 인도 현지통화 채권의 특성 상 투자대상 채권 또는 채권발행자 중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(S&P, Moody's, Fitch)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, 투자적격등급(BBB-) 미만의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이 투자신탁에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,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등급을 부여 받은 채권 또는 발행자의 채권에 50% 이상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</p> <p><생략></p>	<p>또는 채권발행자 중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(S&P, Moody's, Fitch)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, 투자적격등급(BBB-) 미만의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이 투자신탁에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,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등급을 부여 받은 채권 또는 발행자의 채권에 50% 이상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</p> <p><생략></p>
<p>[제 2 부 별첨 1] 모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다. (1) 투자전략 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</p>	<p>① 인도 현지통화 채권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② 인도 현지통화 채권에의 투자는 공기업 관련 채권 등 상대적으로 우량채권 위주로 종목을 다변화할 예정이며,</p> <p>인도 현지의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투자자문 정보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할 예정입니다. 다만, 인도 현지통화 채권의 특성 상 투자대상 채권 또는 채권발행자 중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(S&P, Moody's, Fitch)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, 투자적격등급(BBB-) 미만의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이 투자신탁에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,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등급을 부여 받은 채권 또는 발행자의 채권에 50% 이상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</p> <p>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위험평가액 기준 10% 이하에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[해외 투자자문회사 소개]</p> <p><중략></p>	<p>① 인도 현지통화 채권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 <p>② 인도 현지통화 채권에의 투자는 공기업 관련 채권 등 상대적으로 우량채권 위주로 종목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. 다만, 인도 현지통화 채권의 특성 상 투자대상 채권 또는 채권발행자 중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(S&P, Moody's, Fitch)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, 투자적격등급(BBB-) 미만의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이에 따라, 이 투자신탁에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 받지 않았거나,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등급을 부여 받은 채권 또는 발행자의 채권에 50% 이상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</p> <p>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위험평가액 기준 10% 이하에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삭제></p>

2) 운용역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이창헌</u>	<u>송진용</u>

3) 모투자신탁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조항 추가

[정관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61 조의 1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	<신설>	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회사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회사가 매입하는 모투자신탁 중 하나라도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 중 70%에 해당하는 금액(이하 “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”)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보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</u>

4) 보수인출시기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7 조 (보수)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 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되,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당해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당해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이후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</p> <p><u>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</u></p> <p>3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	<p>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 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되,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당해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당해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까지로 하고 이후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</p> <p><u>2. <삭제></u></p> <p>3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</p>

5) 투자대상자산 추가

주1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<u>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</p>

주2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<신설></u></p> <p>4.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<u>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 <p>4.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</p>

	<신설>	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--	------	---

6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-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
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

- 미래에셋슬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

미래에셋슬로몬플래너증권모투자신탁G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- 미래에셋상생ESG증권투자신탁(주식)

-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(주식)

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-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]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7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2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5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I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<u>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C1, C2, C3, C4, C5, I] 90 일미만: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2. 종류C-F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-P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</p> <p>4. 종류C-Pe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</p> <p>5. 종류C-P2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</p> <p>6. 종류C-P2e 수익증권 해당사항없음</p> <p>7. 종류I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C-F, I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 [C-P, C-Pe, C-P2, C-P2e] 없음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G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2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종류C5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종류I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C1, C2, C3, C4, C5, I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9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 EMP 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1	2	25.6	23.35
미래에셋 AI 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4	5	5.39	4.95
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1.1	19.11
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 AP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3	3	12.69	14.34
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자신탁 G1 호(주식)	2	2	<u>19.73</u>	<u>19.87</u>
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)	5	5	<u>0.53</u>	<u>0.99</u>
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<u>23.92</u>	<u>23.02</u>
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자신탁 G1 호(주식)	2	2	<u>19.74</u>	<u>19.87</u>
미래에셋연금 PanAsia 컨슈머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<u>16.67</u>	<u>18.93</u>
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<u>12.71</u>	<u>14.46</u>
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투자자신탁 1 호(H)(채권)	4	4	<u>5.37</u>	<u>6.25</u>
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투자자신탁(H)(주식-재간접형)	2	2	<u>18.38</u>	<u>21.76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자신탁 G1 호(주식)	2	2	<u>19.74</u>	<u>19.87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자신탁 3 호(주식)	2	2	<u>22.53</u>	<u>22.21</u>
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1	1	<u>26.1</u>	<u>25.8</u>
미래에셋좋은기업 ESG 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2	2	<u>24.04</u>	<u>22.63</u>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)	2	2	<u>22.85</u>	<u>24.92</u>
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2	2	<u>18.51</u>	<u>19.0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<u>7.56</u>	<u>9.23</u>

10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11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
	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②~③ <생략>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②~③ <생략>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<u>또는</u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<생략>	
--	--	--

12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일반사무관리회사 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 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 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송진용 본부장

2) 주요경력

(03년~06년) 대신증권/대신투신운용 마케팅, 주식운용

(06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

2. 운용현황(2022.12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투자신탁명	설정일	설정액(백만원)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11-10	305,352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006-03-20	139,588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2013-10-21	136,998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007-02-09	135,898
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6-05-09	84,662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9-02-02	81,659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5-09-18	66,593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14-11-21	60,172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7-11-14	59,677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007-11-14	57,952

3. 운용성과(2022.12.31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투자신탁명	1개월	3개월	6개월	설정 이후
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.84	2.17	-18.46	73.36
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4.85	5.59	-16.28	196.69
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0.97	-5.77	-10.25	69.78
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7.27	3.53	-4.27	374.65
미래에셋베트남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0.11	-15.73	-18.99	96.28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1.22	-11.00	-20.11	118.75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6.38	-9.48	7.31	219.33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2.28	-2.89	-2.53	85.67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7.12	-3.30	43.29	-72.13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(주식)	-5.63	-8.20	7.01	-6.28